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5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6395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7구합55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3.
판 결 선 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3. 원고에게 한 취득세 16,713,260원, 지방교육세 1,431,800원, 농어촌특별세 715,90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18,860,960원의 추징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취득세 18,860,960원의 부과처분'을 납세고지서의 내용과 법률적 성격에 맞게 선해하여 기재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5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17행의 "때문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원고의 남편과 함께 C의 직장 의료보험에 같이 등재되었는데 임대소득이 나타나면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로 변동될 것을 우려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과 전입신고를 미루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기존에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하고 있는 점(원고는 제1심에서 C가 본인 형편상 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원고는 2016. 2. 4. 피고로부터 과세예고 통지를 받자 2016. 2. 5.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조건 신고서를 제출한 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위 등에 관한 설명이 일관되지 못하고, C로부터 원고 주장의 월 차임 80만 원을 실제 수령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원고의 계좌로 이체받았다고 하면서도 위 월 차임 80만 원은 C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5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필곤

판사 신숙희

판사 이승철